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-0286호

# 2025년도「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(HFSP) 협력사업」 신규과제 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도 「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(HFSP) 협력사업」신규 과제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25년 3월 10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상 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

## 1. 사업목적

- o 국내 연구자의 HFSP\* 참여 활성화를 통해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연구진흥 및 국제사회의 지속 성장 추구
  - \* 휴먼 프론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(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)

# 2.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
- ㅇ 지원내용
  - 국내 연구자 대상 HFSP 프로그램 홍보 및 주요 정보 공유
  - 국내 연구자의 HFSP 참여율 증대를 위한 전략 마련
  - HFSP 프로그램\*의 해외 연구자 유치가 가능한 국내 우수 연구기관 발굴
  - \* HFSP Fellowship Program
  - 생명과학·바이오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킹 지원 등
- ㅇ 지원규모 : 100백만원 ※ 간접비는 직접비의 5%로 계상
- ㅇ 선정규모 : 1개 과제
- ㅇ 지원기간 : 12개월

#### ㅇ 사업 수행 체계



- ※ (공동연구개발기관) 코디네이터 1개(필수) 및 기타 기관(선택)
- ※ (코디네이터)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경험 및 전문지식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HFSP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기관(또는 관련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)
- ※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은 다른 기관으로 구성

## 3. 신청 자격

####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(정의)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괴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괴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・단체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2조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・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・단체를 말한다.

-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- 1.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- 2. 공동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- 3.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####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 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- 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- 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- 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 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- 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- 6. 연구개발성과 창출・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- 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- 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저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. 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- 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-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- ※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

#### 4. 참여제한

- o (참여제한 중인 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
  - 단,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  -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, 반드시 전문기관 (한국연구재단)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- ※ 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제59조 제1항
-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(http://www.ntis.go.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)
- ㅇ 본 사업은 '연구과제 수 상한제(3책 5공)'에 적용됨
- (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
   타 부처/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, 연구내용 및
  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경우 등은 신청 제한
- ※ 신청서 접수 후 NTIS 유사성 검증 결과에 따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선정 처리

# 5. 신청방법

- o 2025년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(HFSP) 협력사업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\*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
  - \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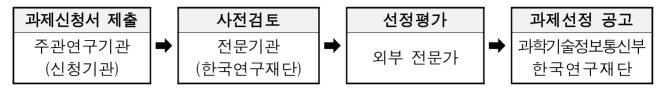
○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**(IRIS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・승인

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		신청			
연구(책임)자가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(학력, 경력 등)	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	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		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·승인	연구과제 <b>신청완료</b>
① 연구자	② 주관연구기관	연구책임자		주관연구기관장	

- ※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/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.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
- 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정보 등록 필수
  - 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  - \*\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    - 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- 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  - 〈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〉 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  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
  - 〈00대학교〉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  -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  - ※ 현재 〈00대학교 산학협력단〉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〈00대학교〉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〈00대학교 산학협력단〉으로도 신청가능
- 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-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s://www.iris.go.kr)
   로그인 → R&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
  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  - 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- o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 상단의 '최종확인' 완료 이후 '제출'이 가능함.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  - ※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

## 6.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

ㅇ 선정절차



- 사전검토 : 제출서류 구비요건,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을 검토

- 선정평가 :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검토 및 토의를

통해 평가항목당 점수 부여

ㅇ 평가항목

평가 지표					
① 연구의 필요성 및 구체성					
② 연구목표,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					
③ 연구과제 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					
④ 연구책임자 연구역량 및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					
⑤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					
⑥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					

※ 상기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# 6.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# ㅇ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		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<mark>(신청마감일)</mark>	2025.3.10.(월) ~ <b>2025.4.9.(수) 17:00까지</b>		
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	2025.3.10.(월) ~ <b>2025.4.9.(수) 18:00까지</b>		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		

- 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
- 연구책임자 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워칙으로 함
- 주관연구기관 : [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함)

- <u>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</u>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(유효성검증 오류 등)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
#### ※ 신청 시 확인사항

- 한국연구자정보(KRI) 홈페이지에서 본인 정보(연구실적, 연락처 등)를 최근 정보로 입력/수정
- 국내 소속기관(대학, 연구소 등)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를 통해 과제 관리 (신청. 협약. 정산 등)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. 신청 자료를 사전에 준비
- 0 제출서류
- ①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1부
- ② 신규과제 기타 증빙양식 1부
  -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
  -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/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

#### 7. 관련규정

-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시행령, 시행규칙
-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
- o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

  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
- 8. 추진 일정(안)

ㅇ 2025.4.9.(수) : 접수마감

ㅇ 2025.4월 중 : 선정평가

ㅇ 2025.4월 중 : 선정결과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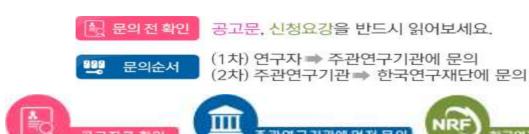
ㅇ 2025.4월 : 연구개시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 9. 문의처

ㅇ 문의절차

"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"





#### ㅇ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 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
- 한국연구재단(https://www.nrf.re.kr)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→ 사업공지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a href="https://www.iris.go.kr">https://www.iris.go.kr</a>)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

## ㅇ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gaia.go.kr) 접속
- 법·규정·규칙: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→ '공통 법·규정'→ '과학기술정보통신부','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'관련 확인
- 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: 「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」 클릭



## ㅇ 문의처

- ①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1877-2041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
  - 장부권 사무관 ☎ 044) 202-4362 / E-mail : bugwon@korea.kr
  - 강수한 주무관 ☎ 044) 202-4364 / E-mail : philadelphia1318@korea.kr
- ③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
  - 이태성 연구원 ☎ 02) 3460-5733 / E-mail : taesunglee@nrf.re.kr